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0.

발 의 자 : 고동진 · 김대식 · 이달희
박덕흠 · 송석준 · 서일준
백종헌 · 이인선 · 안상훈
강승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(제동장치)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,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

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, 이 경우에 한하여 「도로교통법」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,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.

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, 자전거도로, 보도 등 「도로교통법」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,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

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 그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0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1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을 운행한 운전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자전거등의 통행방법 의 특례) ① ~ ⑥ (생 략)	제13조의2(자전거등의 통행방법 의 특례) ① ~ ⑥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⑦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 는 경우에 그 운전자는 도로상 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.</u>
제160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16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1. 제13조의2제7항을 위반하 여 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 는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 를 갖춘 것을 운행한 운전자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